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4-80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5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동물보호법」 개정 사항 반영 및 반려견 놀이터 시설 이용료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반려동물 프로그램 수입 처리 명시(안 제21조제4항)
- 나.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(안 제21조제5항)
- 다. 반려견 놀이터 시설 등 이용료 정책 명시(안 제24조~제26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동물보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 : 2024. 4. 18.~5. 8.(제출된 의견 없음)
 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 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 - 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개선사항 없음
 - 5) 제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원안의결(2024. 5. 14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및 제7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8호를 제12호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 제5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0호 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8호(종전의 제4호) 중 “법 제15조”를 “법 제35조 및 제36조”로 하고, 제11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“동물”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「동물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.
2. “소유자 등”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 ·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유실 · 유기동물(이하 “유기동물”이라 한다)”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도로 ·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.
4. “피학대동물”이란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.
5. “맹견”이란 법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.

6. “등록대상동물”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동물의 보호, 유실·유기(遺棄) 방지, 질병의 관리,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.

11. “반려동물”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,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.

13. “이용료”란 마포구 반려동물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구 청장의 의무)”를 “(구 청장의 책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제5조”를 “영 제6조”로 한다. 제5조제2항제2호 중 “법 제4조제4항”을 “법 제4조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법 제25조제1항”을 “법 제51조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법 제41조”를 “법 제90조”로, “동물보호명예감시원”을 “명예동물보호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본문 중 “제2조제2호”를 “제2조제6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동물보호관리시스템”을 “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”으로 한다.

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맹견의 관리) ① 구 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보험에 가

입하여야 한다.

제6조의3(맹견의 출입금지 등)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
2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
4.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5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
6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
7.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

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별지 1호”를 “별지 제4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동물보호관리시스템”을 “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법 제15조제1항”을 “법 제35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15조제4항”을 “법 제36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행규칙 제15조제1항”을 “시행규칙 제16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5조”를 “영 제6조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시행규칙 제15조제4항”을 “시행규칙 제21조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15조제7항”을 “법 제36조제4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법 제36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

하여야 한다.

제11조 중 “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”을 “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(www.animal.go.kr)에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4조”를 “법 제34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법 제39조제1항제3호”를 “법 제86조제1항제3호”로 한다.

제13조제3항 중 “법 제21조 또는 제22조”를 “법 제45조 또는 제46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1조”를 “법 제45조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제5조”를 “제6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제14조제1항 중 “법 제14조제1항제3호”를 “법 제34조제1항제3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5조”를 “제6조”로, “법 제21조”를 “법 제45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 제20조”를 “법 제43조”로, “법 제21조 또는 제22조”를 “법 제45조 또는 제46조”로, “있으며,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3조를 준용한다”를 “있다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법 제39조”를 “법 제86조”로, “법 제32조제1항”을 “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, 법 제73조제1항”으로, “등(이하 “소유자 등”이라 한다)”을 “등”으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 “(동물보호명예감시원)”을 “(명예동물보호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동물보호명예감시원(이하 “명예감시원”이라 한다)”을 “법 제90조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명예감시

원”을 각각 “명예동물보호관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생명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,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행사 개최 및 캠페인 등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다.

④ 반려동물 문화행사 및 캠페인 등 관련프로그램 이용료 수입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한다.

⑤ 구청장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치료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3조제2항제1호 중 “「동물보호법」 제2조제3의2호”를 “「동물보호법」 제2조제5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「동물보호법」 제12조”를 “「동물보호법」 제15조”로 한다.

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(반려견 놀이터 시설 이용료) ① 구청장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, 제156조 및 제161조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, 이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② 이용료 등의 수입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한다.

제25조(반려견 놀이터 시설 이용료의 감면)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전액 감면

- 가.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
- 나.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
- 다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100분의 50 감면

- 가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보호자
- 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
- 다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또는 가족
- 라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- 마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- 바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- 사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- 아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, 그 유족 또는 가족
- 자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
차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무청
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
하는 사람과 그 가족

②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할
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.

제26조(반려견 놀이터 시설 이용료의 반환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
할 수 있다.

1.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
2.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
3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

제27조(관계규정의 준용)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
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시설 이용료의 범위(제24조 관련)

(단위 : 원)

구분	대상	이용료(대여료)	비고
반려견 놀이터	놀이기구	무료	※ 이용료 기준 - 이용일(1일)의 이용시간내 사용
반려동물 캠핑장	캠핑 데크	5,000	
	텐트류 (그늘막, 인디언텐트, 타프 등)	5,000 ~ 10,000	
	캠핑용품 (돗자리, 의자, 테이블 등)	2,000 ~ 10,000	
반려견 샤워실	샤워기, 건조기 등	무료	

[별표 2]

시설 이용료 반환기준(제26조 관련)

구분	반환기준
1.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용예정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: 시설 이용료 전액 반환 ○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: 시설 이용료의 50% 공제 후 반환
2.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용예정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: 시설 이용료 전액 반환 ○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: 시설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시설 이용료의 10% 배상
3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: 시설 이용료 전액 환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유실·유기동물(이하 “유기동물“이라 한다)“이란 「동물보호법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·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<삭 제></p>
<p>2. “등록대상동물”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·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(月齡)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.</p> <p><신 설></p>	<p>1. “동물”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「동물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.</p> <p>2. “소유자 등”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·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
	<p>3. “유실·유기동물(이하 “유기동물“이라 한다)“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도로·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</p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3. (생 략)

4. “동물보호센터”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·운영하거나,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5. ~ 6. (생 략)

<신 설>

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.

4. “피학대동물”이란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.
5. “맹견”이란 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.

6. “등록대상동물”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동물의 보호, 유실·유기(遺棄) 방지, 질병의 관리,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.

7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8. -----

법 제35조 및 제36조-----

-----.

9. ~ 10. (현행 제5호부터 제6호 까지와 같음)

11. “반려동물”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,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.

7. “반려동물”이란 사람이 정서적
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
기르는 동물을 말한다.

8. (생 략)

<신 설>

제3조(구청장의 의무) ① · ② (생 략)

③ 구청장은 「동물보호법 시행
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제5
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
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
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
수 있다.

제5조(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· 운
영) ① (생 략)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
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
고려하여 구성하되, 공무원인 위
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
부서의 장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
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
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
장이 위촉한다.

1. (생 략)

2.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

<삭 제>

12. (현행 제8호와 같음)

13. “이용료”란 마포구 반려동물
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
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
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· ② (현행
과 같음)

③ ----- 영 제6조-----

-----.
-----.

제5조(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· 운
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<p>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<u>법 제4조제4항</u>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</p> <p>3. <u>법 제25조제1항</u>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</p> <p>4. <u>법 제41조</u>에 따른 <u>동물보호명예감시원</u>으로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</p> <p>5. · 6. (생략) ③ ~ ⑬ (생략)</p> <p>제6조(등록대상동물의 등록) ① <u>제2조제2호</u>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·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(이하 “등록대행자”라 한다)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,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.</p> <p>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(이하 “무선식별장치”라 한다)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 후 <u>동물보호관리시스템</u>에 기록하여야 하며, 등록대상동물이</p>	<p>----- <u>법 제4조제3항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3. <u>법 제51조제1항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4. <u>법 제90조</u>----- <u>명예동물보호관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5. · 6. (현행과 같음) ③ ~ ⑬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등록대상동물의 등록) ① <u>제2조제6호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</u>-----</p> <p>-----</p>
--	---

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· ④ (생략)

<신설>

-----.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제6조의2(맹견의 관리)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제6조의3(맹견의 출입금지 등)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

2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
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

<신설>

	<p>4.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</p> <p>5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</p> <p>6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</p> <p>7.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</p>
제7조(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) ① (생 략)	제7조(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 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 유자가 시행규칙 <u>별지 1호</u> 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 <u>별지 제4호</u>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 는 「주민등록법」 제16조제1항 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<u>동물보</u> <u>호관리시스템</u> 의 주소를 변경하 고, 등록사항을 기록·유지·관 리하여야 한다.	1. ~ 3.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</u> ----- -----.
제8조(동물보호센터의 설치·지정	제8조(동물보호센터의 설치·지정

등)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·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3. (생략)

4. 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

④ ~ ⑦ (생략)

제9조(동물보호센터 감독)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·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·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

등) ① ----- 법 제35조제1항-----
-----.

② ----- 법 제36조
-----.

③ ----- 시행규칙 제16조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영 제6조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9조(동물보호센터 감독) ① -----

----- 시행규칙 제21조제3항

-----.

② ----- 법 제36조
제4항-----

된 경우,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

제11조(보호동물의 공고 등)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(동물보호 및 관리)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·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·관리하게 하여야 한다.

1. · 2. (생략)

② · ③ (생략)

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·점검결과 보호·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---. 다만, 법 제36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제11조(보호동물의 공고 등) -----

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(www.animal.go.kr)에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---
---.

제12조(동물보호 및 관리) ① -----

법 제34조-----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 법 제86조제1항제3호-----
-----.

제13조(동물의 반환 등) ① · ② (생략)

③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,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,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 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⑤ 법 제21조의 “동물을 애호하는 자”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

2.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 명예감시원

3. (생략)

제14조(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)

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3조(동물의 반환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법 제45조 또는 제46조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법 제45조제1항-----
-----.

1. ----- 제6조-----

2.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

3.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)

① ----- 법 제34조제1항제3호-----

-----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,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,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.

③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,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3조를 준용한다.

제17조(출입·검사 등) ①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, 사육·관리·보호자,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등(이하 “소유자 등”이라 한다)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제18조(동물보호명예감시원) ① 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

② -----

----- 제6조

----- 법 제45조

--.

③ 법 제43조-----
----- 법
제45조 또는 제46조-----
- 있다.

제17조(출입·검사 등) ① -----
----- 법 제86조
----- 법
제69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, 법
제73조제1항 ----- 등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명예동물보호관) ① -----

보호를 위한 지도·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(이하 “명예감시원”이라 한다)을 위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명예감시원은 동물보호 활동에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.

③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
제21조(반려동물의 지원) ① · ② (생략)

③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생명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,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.

[본조 신설 2019.7.11.]

<신설>

<신설>

----- 법 제9
0조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-----
-----.

② ----- 명예동물보호관-----

-----.

③ 명예동물보호관-----

-----.

제21조(반려동물의 지원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생명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,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 행사 개최 및 캠페인 등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다.

④ 반려동물 문화행사 및 캠페인 등 관련프로그램 이용료 수입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세외 수입으로 한다.

⑤ 구청장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치료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 또

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
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
있다.

제23조(반려견 놀이터 설치 · 운영)

- ① (생 략)
-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견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 - 1. 「동물보호법」 제2조제3의2호에 따른 맹견
 - 2. 「동물보호법」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
 - 3. (생 략)
 - ③ ~ ⑤ (생 략)

<신 설>

제23조(반려견 놀이터 설치 · 운영)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-----

-----.

1. 「동물보호법」 제2조제5호--

2. 「동물보호법」 제15조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반려견 놀이터 시설 이용료)

① 구청장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, 제156조 및 제161조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, 이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② 이용료 등의 수입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한다.

제25조(반려견 놀이터 시설 이용료

의 감면)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

<신 설>

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전액 감면

가.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

을 이용하는 자

나.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
공익사업

다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
고 인정하는 경우

2. 100분의 50 감면

가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
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
장애인과 그 보호자

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
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또는 그 가족

다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
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
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또는
가족

라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
른 한부모가족

마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
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
따른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
족 또는 가족

바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
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

참전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
사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
아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, 그 유족 또는 가족

자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
차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

②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26조(반려견 놀이터 시설 이용료의 반환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

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
취소하는 경우

2.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
취소하는 경우

3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
유로 취소하는 경우

<신 설>

제27조(관계규정의 준용) 예산 지원
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
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
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
용한다.

<신 설>

[별표 1]

시설 이용료의 범위(제24조 관련)

(단위 : 원)

구분	대상	이용료(대여료)	비고
반려견 놀이터	놀이기구	무료	※ 이용료 기준 - 이용일(1일)의 이용시간내 사용
	캠핑 페코	5,000	
반려동물 캠핑장	렌트류 (그늘막, 인디언렌트, 타프 등)	5,000 ~ 10,000	
	캠핑용품 (돗자리, 의자, 테이블 등)	2,000 ~ 10,000	
반려견 샤워실	샤워기, 건조기 등	무료	

<신 설>

[별표 2]

시설 이용료 반환기준(제26조 관련)

구분	반환기준
1. 이용자와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이용예정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: 시설 이용료 전액 반환○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: 시설 이용료의 50% 공제 후 반환
2.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이용예정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: 시설 이용료 전액 반환○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: 시설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시설 이용료의 10% 배상
3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: 시설 이용료 전액 환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제21조(반려동물의 지원) ⑤ 구청장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치료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소요됨

4. 작성자 : 관광경제국 경제진흥과 김성현 (☎ 3153-8543)